##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94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정혜경·박홍배·이훈기

민형배 • 윤종오 • 김태선

이학영 · 전종덕 · 이재강

김남근 · 강득구 · 한창민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적 상한을 설정하여 이를 넘어서는 노사합의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고 있음. 정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기획 근로감독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ILO 전문가위원회와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문제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며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침 제시는 가능하나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근로시간면제 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구체적인 노조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없는 한 노조 전임자 지원을 이유로 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이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근로시간 면제기준으로 개정하여 상한 기준이 아닌 하한 기준으로 변경 및 한도 초과 협약에 관한 무효 조

항을 개정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규정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 조항 삭제하고자 함(안 제 24조 및 제24조의2).

#### 법률 제 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한도"를 "기준"으로, "한도"라"를 "기준"이라"로,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을 "이상의"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을 "제1항의업무에 종사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한도를"을 "기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도를"을 "기준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도를"을 "기준을"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4條(근로시간 면제 등) ①	第24條(근로시간 면제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②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	
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	
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	
시간 면제 <u>한도</u> (이하 "근로시	<u>기준</u>
간 면제 <u>한도"라</u> 한다) <u>를 초과</u>	<u>기준"이라</u>
<u>하지 아니하는</u> 범위에서 임금	<u>이상의</u>
의 손실 없이 <u>사용자와의 협의</u>	제1 <u>항의 업무에 종사할</u>
•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	<u>.</u>
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u>&lt;삭 제&gt;</u>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	
<u>효로 한다.</u>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
회) ①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ইবী) ①
근로시간 면제 <u>한도를</u> 정하기	<u>기준을</u>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	
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	
회(이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라 한다)에 둔다.	
②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	② <u>7</u> ]
<u>도를</u>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즈 <u>으</u>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4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장이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u>한</u>	<u>7</u> ]
<u>도를</u> 고시하여야 한다.	<u> 군을</u>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